##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1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정성국·서천호·김 건

최보윤 • 권영진 • 백종헌

곽규택 · 김용태 · 진종오

박수영 · 김대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치원·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등학교·중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	①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u>유치원</u> 과정의 경우 : 특수	1. <u>유치원·초등학교</u>		
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			
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u>.</u>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	2. <u>중학교</u> · <u>고등학교</u>		
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			
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	<u>&lt;삭 제&gt;</u>		
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			
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